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제정 2009. 4. 3]
[개정 2009. 10. 21]
[개정 2010. 11. 16]
[개정 2010. 12. 13]
[개정 2011. 8. 9]
[개정 2011. 11. 28]
[개정 2013. 5. 16]
[전부개정 2013. 9. 16]
[개정 2013. 11. 26]
[개정 2015. 1. 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사무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4조(임원)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원 장 1인
이 사 15인 이내(원장포함)
감 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면)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원장

③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산업계·학계·과학기술계·언론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진흥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경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임명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④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진흥원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 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진흥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임원이 선임된 날까지로 한다.
-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조(경영계약)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경영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경영계약안에 대해 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임직원의 직무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진흥원 『임원 직무청렴의무 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전항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등)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원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진흥원의 이익과 원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선임비상임 이사

2. 비상임이사중 연장자 순

④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중대한 사고 등 사회통념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휴가, 국내외출장 등 통상적인 경우에는 직제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⑥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요청 등) 제1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2항 및 제3항,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 제2항, 제48조(경영실적평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감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요청 등) 제1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2항 및 제3항,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평가) 제2항, 제48조(경영실적평가)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 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할 때

제15조(직원의 임면) 진흥원 직원은 진흥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보전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 보증
9. 정관 변경
10. 주요규정의 제정 및 변경
11. 임원의 보수
1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1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감사원감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하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 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무대행자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⑤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원장이 소집한다.

⑥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진흥원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안건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해임요청 등) ①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원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회의 회의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배부는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장 사 업

제23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개정 2013.11.26)
4. 산학협력, 국제협력, 산업기술저변확충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개정 2013.11.26)
5.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개정 2013.11.26)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개정 2013.11.26)
7.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개정 2013.11.26)
8. 기술평가, 기술금융 및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개정 2013.11.26)
9.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신설13.11.26)
10. 중견기업의 육성 및 혁신 지원(신설 2013.11.26)
11. 산업기술혁신 관련 통계 조사·분석 및 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운영·연계(개정 2013.11.26)
12. 정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개정 2013.11.26)
13. 법령에 의하여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개정 2013.11.26)
14. 위 각 호와 관련된 출판, 영상, 방송,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개정 2013.11.26)
15. 소유 부동산의 분양, 임대 및 부대사업(개정 2013.11.26)
1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에 대한 출자(개정 2013.11.26)
17.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관리 및 운용(신설 2015.1.6)

②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출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진흥원 설립당시 정부가 출연한 재산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른 진흥원의 재산 중 토지 및 건물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① 진흥원의 재산 중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임대에 관한 주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국·내외로부터의 기부금, 차입금, 용역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의 편성) ①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9조에 따른 경영목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되,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진흥원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진흥원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준예산) ① 진흥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진흥원은 제29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9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서의 제출)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3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연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관 등

제34조(부설기관) ① 진흥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운영) ① 원장은 진흥원의 경영 효율화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자문 등) ① 진흥원은 산업기술 진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기관 등에 원장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규정의 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주요규정 이외의 규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주요규정의 범위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9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에 따라 체결한 경영계약

3.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공시) ① 진흥원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8.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감사의 감사보고서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감사원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
12.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진흥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제도를 실시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 ② 진흥원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제42조(경영혁신) 진흥원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① 진흥원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② 지식재산권의 취득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보상할 수 있다.

제45조(해산)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46조(공고)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9. 4.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2009연도 사업 및 예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을 고려하여 작성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흥원 설립이전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진흥원으로 승계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기 행해진 행위(재판에 계류중인 사안 포함)는 진흥원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① 진흥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하고, 진흥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설립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직원의 신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개편계획 및 재편계획에 따라 진흥원 소속으로 정해진 직원은 설립일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원규적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 직원에 대한 설립일부서의 원규적용은 신규 제정 전까지 종전 한국산업기술재단의 규정(규칙, 요령, 방침, 지침, 계획 등 포함)에 의한다.

부 칙(2009. 10.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